

교단에 몇십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적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수분야의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도 대충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기준을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은 많이 주면 좋다고 자꾸 동의를 하시는데 그런 기준을 다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孫馥委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教育賞은 수상요건이 교육시책 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사업에 혼신적으로 참여해서 서울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수여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서울教育賞이 시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적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준과 확인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劉大運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본 안건의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55分 會議中止)

(15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 劉大運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達源委員 말씀하십시오.

○李達源委員 서울特別市教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으로는 제3조 시상부문 중 제1호 유아·특수교육부문 1명을 제1호 유아교육부문 1명과 제2호 특수교육부문 1명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 제3호를 제4호, 제4호를 제5호, 제5호를 제6호로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劉大運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동의합니다.

○委員長 劉大運 그렇다면 李達源委員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李達源委員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제3조 시상부문 중 제1호 유아·특수교육부문 1명을 제1호 유아교육부문 1명과 제2호 특수교육부문 1명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증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유아·특수교육부문”을 “유아교육부문”으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特殊교육부문 1명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증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제1호증 “초등교육부문(유아교육부문포함)”을 “초등교육부문”으로 하여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부문 1명

2. 特殊교육부문 1명

부 칙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委員長 劉大運 教育廳에서는 청원에 대해서 오늘 질의 답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教育廳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p> <p>(「잠시 停會를 하죠」하는 委員 있음)</p> <p>잠시 1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 style="text-align: center;">(15時 11分 會議中止)</p> <p style="text-align: center;">(15時 13分 繼續開議)</p> <p>○ 委員長 劉大運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p> <p>(議事棒 3)</p> <hr/> <p>3. 市民아파트敷地賣却時地方財政法施行令第100條2項積極의適用請願撤回動議의件</p> <p>○ 委員長 劉大運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연희3동 6-51 연희B지구아파트 5동 301호 이성란 외 378명이 청원하고 都市整備委員會 李康玉議員이 소개한 시민아파트 부지매각시 地方財政法施行令 제100조제2항의 적극적인 적용청원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그 동안 본 청원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상정하여 紹介議員님의 요지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또한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서대문 연희B지구 현장방문까지를 모두 마친 바 있으며, 본 청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청원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p> <p>본 청원을 이번 회기에 다루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1997년 5월 6일자로 청원인 대표 이성란과 紹介議員이신 李康玉議員께서 본 청원의 철회요구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p> <p>따라서 본 청원의 심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청원인들의 의사대로 철회하기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하고 본 건을 종결하겠습니다.</p> <p>(議事棒 3打)</p>	<p>4. 東洋工高移轉計劃撤回및人文系高等學校設立要求에關한請願審查의件(盧永奭議員 紹介)</p> <p>5. 東洋工業高等學校移轉承認의早速한履行促求에關한請願(鄭淵甫議員 紹介)</p> <p>○ 委員長 劉大運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가양1동 한양아파트 109동 1101호 남경임 외 2,515명이 청원하고盧永奭議員님이 소개하신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 고척동 62-160 동양공업전문대학 학생 안교환 외 1명이 水資源管理委員會 鄭淵甫議員님이 소개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여러 위원님들께 위 2개의 청원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만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6일자로 위 청원과 반대의견의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부득이 일괄상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와 토의가 되도록 일괄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p> <p>紹介議員 의견청취에 앞서 請願規程 제8조에 의하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먼저 본 안건의 紹介議員이신盧永奭委員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盧永奭委員 존경하는 劉大運 委員長, 그리고 教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들, 그리고 청원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p> <p>먼저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본인은 請願紹介議員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위원의 지역구인 가양동은 서울特別市에</p>
--	---